

Yeosu Web Contents

2022년 01월 19일 02시 16분



목차

목차	2
국가암검진	3
사업개요	3
검진기간	3
검진대상	3
검진항목 및 검진주기	3
비고	3
검진절차	4
검진대상조회	4

사업개요

저소득 주민의 고위험 연령층을 대상으로 질병의 조기발견, 조기치료의 기회를 제공하여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의료비 절감과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자 함

검진기간

연중

검진대상

당해연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“암 검진표” 수령자

- 의료급여수급권자
-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(2020년 11월 부과기준)에 해당하는 자
 - ※ 직장가입자 : 월 보험료 100,000원 이하(소득 월액보험료 포함)
 - ※ 지역가입자 : 월 보험료 94,000원 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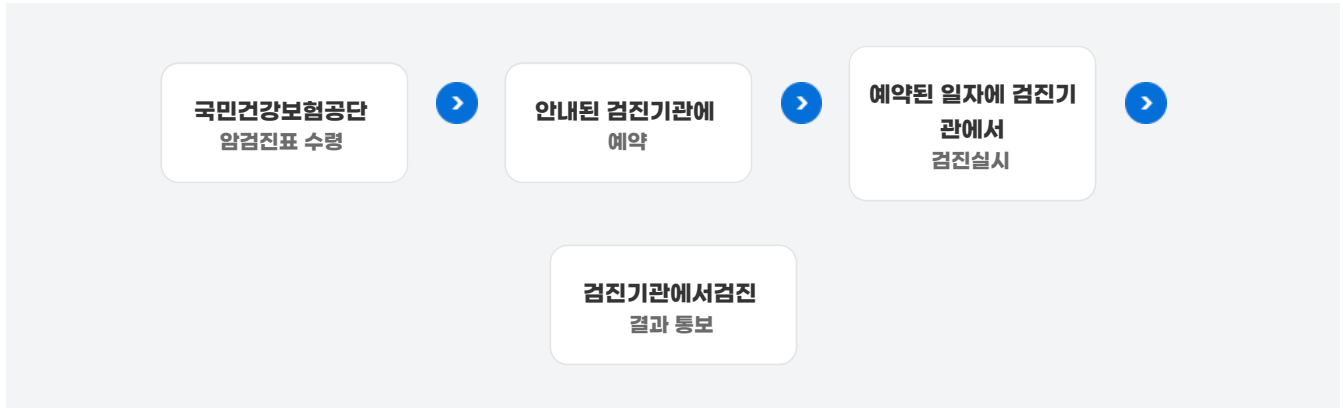
검진항목 및 검진주기

구분	검진주기	검진대상	검진방법
위암	2년	40세 이상의 남·여	위내시경 또는 위장조영검사
간암	6개월(상·하반기)	40세 이상의 남·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	간초음파검사+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
대장암	1년	50세 이상의 남·여(홀수·짝수년생 모두)	분변잠혈반응검사(대변검사) ※ 이상소견시 대장내시경검사
유방암	2년	40세 이상의 여성	유방촬영술
자궁경부암	2년	20세 이상의 여성	자궁경부질세포검사
폐암	2년	54-74세 남·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	저선량 흉부 CT검사

비고

- “간암 발생 고위험군”이란 간경변증, B형간염 항원 양성, C형간염 항체 양성,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 질환 환자를 말한다.
- “폐암 발생 고위험군”이란 30갑년(하루평균 담배소비량(갑)*흡연기간(년))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.

검진절차



- 검진시 지참물 : 압검진표,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(의료급여증)
- 유의사항
 - >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(물, 음료 등)
 - > 대장암 검진대상자는 채변통에 대변을 담아 검진기관에 제출하면 되므로 예약전날 미리 준비
 - ※ 채변통 수령가능 장소 : 읍면동 주민센터, 보건소 · 보건지소 및 검진기관

검진대상조회

 국민건강보험공단(<http://www.nhic.or.kr>) 또는 보건소

 안내 검진기관 현황[별첨기] 다운로드

COPYRIGHT © YEOSU. ALL RIGHTS RESERVED.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Yeosu Web Contents

